

4대 사회보험료 원가반영 절실



박종학[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조만간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자는 국세청에 임금지급조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점이 설비건설업계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금년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장한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마다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

록 했다.

올해는 홍보기간으로 이를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내년부터는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사업주는 미신고 총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서다. EITC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저소득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의 현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최상위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인

극빈층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EITC 시행을 위한 통합전산망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인데 여기에 4대보험 통합 자료와 일용근로자 과세자료가 포함되어 관련부처와 공유하게 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EITC 시스템 도입에 는 원칙적으로 찬성, 동참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세청에 제출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자료가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에 제공시 동 보험료의 소급추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경우이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EITC를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제도가 건설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착된 이후에 시행해 줄 것과, 임금지급조서 자료는 EITC 이외에 사용되는 것을 유예토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국세청에 탄원서를 제출

했으며,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도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개 단체는 임금지급조서를 당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 공유는 정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1개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금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직접노무비의 9%, 건강보험은 직접노무비의 4.48%로 사업주 부담분은 6.74%에 해당되지만 근로자 부담금까지 합치면 14%에 달해 설비건설업계 전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정부의 EITC제도 시행을 위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점과 임금지급조서 자료공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산제도가 건설현장에 반영 및 정착된 이후 시행해 줄 것을 4개 단체(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협회) 연명으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탄원, 건의했다.

설비건설업계의 평균이익률 2%를 감안할 때 10%대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 없이 자비로 부담하고도 살아남을 설비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협회는 공사원가에 의무보험금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결과 재경부가 공공공사에 공사원가를 일부 반영하였고, 건교부도 금년부터 공사원가에 보험료의 일부가 반영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하도급자의 낙찰률에 의하여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의 전액이 아닌, 극히 일

부만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공사에는 아직 까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다.

더구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보장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이 것까

지 사업주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금년도 최우선 사업목표로 공공공사 보험료의 실비정산과, 민간공사의 공사원가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하도급자에게 확실하게 지급되도록 보험료 실비정산 도입을 재경부등에 건의하였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설비건설의 70% 정도가 민간공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간발주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해결 없이는 4대보험의 정착이 불가능하므로, 민간발주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과 함께 미 반영 시 발주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건설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에 의한 제도개선 이전에 건설업계의 상생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민간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필히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고, 원도급자는 같은 비용 전액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설비건설업계도 예전에 등한시 했던 4대 보험료가 총 인건비의 11.5%(산업재해보상보험 3.4%, 고용보험 1.3%,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 2.24%)를 차지하는 것을 명심해 반드시 보험료를 포함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더욱이 금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우리 업계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공사비 포션에서 점점 가중되는 부대비용을 무시하고 직접공사비에 적당히 본사관리비만 계상하여 수주할 경우 준공 이전에 큰 낭패를 볼 것이 자명한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투명한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적당한 금액으로 원가를 산출하던 주먹구구식의 경영으

로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노무사, 회계사 등에 자문을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정부와 우리 건설업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근로자가 잘 이해하도록 유도해 근로자 스스로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건설규모가 10배 정도 크고 건설업체 수도 55만여개가 넘지만 원·하도급이 투명하게 협력하며 상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각 업

계간 협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극복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4대

보험과 EITC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갈 해법은 없다. 그러므로 발주자·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근로자 등 각각의 건설주체들이 줄 것은 확실하게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동반성장과 함께 진정한 상생이 될 것이다.

 건설산업의 상생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
 각자가 4대 보험 비용 부담해야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중학 회장은 지난 5월 11일 일간건설신문에 EITC제도 시행을 위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방침과 임금지급조서 자료공유 등으로 인한 설비건설업계의 경영상 애로점을 우려하는 기고문을 게재하여 전문건설업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